

## 비상저감조치 전파·보고 체계도

### I 발령·전파



### II 결과보고



## Q&A

### 1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실제로 저감효과가 있나요?

(국내) '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.2% 줄고, PM<sub>10</sub> 농도가 21% 개선('05, 한국대기환경학회)

(국외) '15년 베이징 적색경보시 차량2부제, 배출사업장·공사장 조업중단 조치로 인해 PM<sub>2.5</sub> 농도가 17~25% 감소('16, 중국 환경보호부)

### 2 차량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출입차량으로 되어 있는데, 공용주차장도 포함되나요?

포함되지 않으나, 필요시 지자체별로 공용주차장까지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치 시행 가능

### 3 기관장이 이용하는 관용승용차도 제외차량에 해당하나요?

기관장 이용차량을 포함하여 관용승용차는 차량부제 적용대상이나,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가능

### 4 정수기 차량 등 공공기관에 물품조달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업용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나요?

정수기 차량은 사업용이고 일반적으로 10인승 이하이므로 차량부제 적용제외

### 5 비상저감대책 시행시 공공사업장 가동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향해야 하나요?

관할기관의 장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상 가동보다 하향된 수준으로 정하되, 정도의 제한은 없음

##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국민실천약속

### 불법 소각 근절하기

01 폐기물 소각 하지 않기



### 날림 먼지 예방하기

02 도로변 불법 주·정차 하지 않기



03 공터에 식물 심기



### 친환경 운전하기

04 친환경 자동차 타기



05 공회전 하지 않기



06 3급하지 않기 급출발·급가속·급감속



### 가정 내 미세먼지 줄이기

07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



08 주방후드·에어컨·진공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



09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



10 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구이·튀김→ 삶기·찌기



#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주세요!



## 비상저감조치란?

고농도 미세먼지(PM<sub>2.5</sub>)가 일정기간 지속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합니다.

##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



### I 시행일

- 2017년 1월부터 홍보 및 담당자 교육, 모의훈련 등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
- ※ 2017년 시범실시 후, 2018년부터 민간 등으로 확대할 예정

### II 적용지역 및 기관

-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대기관리권역의 행정·공공기관
- ※ 행정기관 및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", 부록2 참고)으로 한정하되, 지역주민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

### III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

#### 1 차량부제

- 행정·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(경차량 포함)·승합차
-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·짝수 해당 일에 운행 금지
- ※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트카 등도 차량부제 대상에 포함

#### 적용제의 차량

- 외교용·보도용자동차, 장애인자동차, 결혼·장례식 차량, 임산부 및 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(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)
-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(소방·경찰·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)
- ※ 민원인 출입차량 제외여부는 지역적 특성,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결정

#### 2 사업장·공사장 작업단축

- 행정·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
-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
- 건설공사장 건축물 철거, 절단, 토석, 도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
- ※ 민간부문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

발령요건 검토 및  
시행여부 결정  
(당일 17:00~17:30)

환경부, 과학원

- ▶ 수도권 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익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검토(17:00)

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, 신속히 "비상저감 대비 상황실"을 구성하여 대비

#### <발령요건>

-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어느 한 권역이라도 PM<sub>2.5</sub>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래 여건을 동시 충족
- ① 당일(00~16시) PM<sub>2.5</sub> 평균 50 $\mu\text{g}/\text{m}^3$  초과
- ② 익일 3시간 이상 "매우나쁨" (100 $\mu\text{g}/\text{m}^3$  초과) 이상 예보

비상저감협의회

- ▶ 환경부(차관), 서울·인천·경기(부시장·부지사)로 구성
- ▶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결정
- ※ 국제행사, 수능 등 특수상황시 발령범위 등 조정

비상저감조치  
발표 및 전파  
(당일 17:30~)

환경부

- ▶ 숏기관 상황전파(공문, Fax)
- ▶ 국민안전처 CBS 문자송신 요청
- ▶ 보도자료 배포
- ▶ 에어코리아·모바일앱 게재

서울·인천·경기

- ▶ 지역방송사 자막방송
- ▶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
- ▶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

국민안전처

- ▶ CBS 문자송신

시행기관

- ▶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게 전파

비상저감조치  
시행  
(익일 06~21시)

시행기관

- ▶ 시행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
- ▶ 차량2부제 주차입구에 차량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
- ▶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공지역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검토시행

환경부, 시행기관

- ▶ 특별점검반 구성 수도권대기환경청, 서울·인천·경기,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

- ▶ 이행상황 점검

비상저감조치  
재발령 등 검토  
(익일 17:00)

환경부, 과학원

- ▶ 비상저감조치 재발령, 조기해제 등 검토
- 1 정상 당초 발령대로 당일 06~21시까지 시행

#### 2 재발령

익일 17:00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재발령

#### 3 조기해제

강우, 돌풍,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"좋음(15 $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)" 상태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

점검결과  
보고·평가

일선기관, 시행기관

- ▶ 조치 후 10일 이내 자체 운영결과를 비상저감협의회에 보고
- ※ 뒷면 결과보고체계 참조

환경부, 과학원

- ▶ 조치 후 20일 이내 평가보고서 작성